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개정이유

2015. 7.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며,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 통일, 공정성 확보 등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하였던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안 제3조, 제4조)
-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요율 조정대상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사용하는 경우 신설 (안 제27조제4항제12호)
- 다.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0 초과상승분에서 100분의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 (안 제33조)
- 라.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변상금 징수유예기간 신설 (안 제92조의2)
- 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명칭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 및 관련 조례 일괄 개정 (안 제65조,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74조제항,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 「협동조합 기본법」
- 「지방재정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관계법규 : 별첨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3) 입법예고 : 2015.8. . ~ 2015.9. . (20일 이상)
- 4)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6)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의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또는 회계업무담당부서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제1항 중 “다음”을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제6호가목 중 “목적어”를 “**목적·용도·위치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21조제1항 중 “제27조제2항·제3항”을 “**제27조제4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조제5항”을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27조제4항제3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제30조제2항 중 “바닥면적 이외에”를 “**바닥면적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33조 중 “영 제34조”를 “**제34조**”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5를**”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65조,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71조제7호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제1호부터 제6호”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를 “감정평가업자의”로 하고,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4조제목 및 본문 중 “합필”을 “합병”으로 한다.

제95조 제목 및 본문 중 “분필”을 “분할”로 하고, 같은 조 중 “감정평가 법인에”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p> <p>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위원은 구청장이 서대문구 본청의 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p> <p>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p> <p>②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③ ~ ⑥ (생략)</p> <p>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서대문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다.</p> <p>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 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를 담당 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 당공무원이 된다.</p> <p>⑨ (생략)</p>	<p>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⑨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 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p> <p>3. (생략)</p> <p>4.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 산 무상이관</p> <p>5. (생략)</p> <p>6.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p>	<p>제4조(기능) ① --- 법 제16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다음 ---</p> <p>1. (현행과 같음)</p> <p>2. 영 ----- ----- ----- ----- -----</p> <p>3.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5. (현행과 같음)</p> <p>6. -----</p>

<p>의</p> <p>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 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 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 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생략)</p> <p>7.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영 제7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p> <p>2. ~ 5. (생략)</p>	<p>--</p> <p>가. ----- ----- --- 목적·용도·위치가 --- ----- ----- ----- ----- -----</p> <p>나.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제7조제3항-----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 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 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 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 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 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 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 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b>제27조제2항·제3항</b>, 영 제19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법 <b>제27조제4항</b>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⑤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b>제27조제4항</b>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 <b>제27조제4항·제5항</b>-----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b>제27조제6항</b>----- ----- ----- ⑤ ----- <b>제27조제6항</b> ----- ----- ----- ⑥ (현행과 같음)</p>
<p>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b>제2조제5항</b>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p>	<p>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 ----- ----- ----- <b>제2조제8항</b>----- -----</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p>

<p>① ~ ③ (생략)</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2. (생략)</p> <p>3. 「외국인투자 촉진법」 <b>제13조제4항</b>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4. ~ 11. (생략)</p> <p><b>&lt;신 설&gt;</b></p> <p>⑤ ~ ⑥ (생략)</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1. ~ 2. (현행과 같음)</p> <p>3. ----- <b>제13조제5항</b>----- ----- ----- 4. ~ 11. (현행과 같음)</p> <p><b>1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b></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b>바닥면적 이외에</b>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 ⑦ (생략)</p>	<p>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b>바닥면적과</b>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p>
<p>제31조(대부료의 감면)</p> <p>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b>제13조제8항</b>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p>	<p>제31조(대부료의 감면)</p> <p>① ----- <b>제13조제9항</b> -----</p>

<p>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③ (생략)</p> <p>④ 영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 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제13조 제9항-----</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p>	<p>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p> <p>----- 제34조-----</p> <p>----- 100분의 5 -----</p> <p>----- 100분의 5를 -----</p>
<p>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p> <p>① ~ ③ (생략)</p> <p>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p>	<p>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제13조제6항-----</p>

<p>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p> <p>-----</p> <p>-----</p> <p>-----</p>
<p>제6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p>	<p>제6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p> <p>-----</p> <p>-----</p> <p>----- 재무관-----</p> <p>-----</p>
<p>제66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p> <p>① (생략)</p> <p>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5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p>	<p>제66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재무관-----</p> <p>-----</p> <p>-----</p>
<p>제67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할 때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p>	<p>제67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재무관-----</p> <p>-----</p>
<p>제7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p> <p>1. ~ 6. (생략)</p> <p>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올려진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p>	<p>제71조(물품의 가격)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1호부터 제6호-----</p> <p>-----</p> <p>-----</p>
<p>제74조(불용품의 매각)</p>	<p>제74조(불용품의 매각)</p>

<p>① ~ ③ (생략)</p> <p>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b>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b>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략)</p> <p>⑦ <b>경리관</b>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p> <p>⑧ (생략)</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p> <p>-----</p> <p>----- <b>감정평가업자의</b> -----</p> <p>-----</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b>재무관</b> -----</p> <p>-----</p> <p>-----</p> <p>-----</p> <p>---</p> <p>⑧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b>제92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b></p>
<p>제94조(<b>합필</b>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b>합필</b>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b>합필</b>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94조(<b>합병</b>의 신청) -----</p> <p>----- <b>합병</b>-----</p> <p>-----</p> <p>-----</p> <p>----- <b>합병</b>-----</p>
<p>제95조(공유토지의 <b>분필</b>)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p>	<p>제95조(공유토지의 <b>분할</b>) -----</p> <p>-----</p>

<p>유지분에 따라 <b>분필</b>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b>분필</b>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b>분필</b>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b>분필</b>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b>감정평가법인</b>에 의뢰한다.</p>	<p>----- <b>분할</b>-----</p> <p>-----</p> <p>----- <b>분할</b>-----</p> <p>----- <b>분할</b>-----</p> <p>-----</p> <p>----- <b>분할</b>-----</p> <p>-----</p> <p>----- <b>감정평가업자에게</b>-----</p> <p>-----</p>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대부료 등 감액규정이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서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감액 대상 확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15년 현재 대부계약체결 중인 125건 중 2014년 대비 대부료 상승률이 10%이상으로 감액한 건은 1건 408천원이며,
- 개정조례안에 따라 5% 이상 상승한 경우 감액대상은 10건 460천원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수입감소예상금액은 51천원임.
-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정되고, 최근 3년간 우리구 공시지가 상승율은 3.76%(2013년 3.4%, 2014년 3.7%, 2015년 4.2%)로, 5%로 개정하더라도 향후 감액대상이 대폭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재무과 행정7급 이혜영(330-199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7.21.] [법률 제13017호, 2015.1.20., 일부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제목개정 2015.1.2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 ⑧ (생략)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08호, 2015.7.20., 일부개정]

####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 ⑦ (생략)

####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2015.2.16.>

[전문개정 2009.4.24.]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② ~ ⑧ (생략)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전문개정 2009.4.24.]

**제81조(변상금)**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고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생략)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2015.4.29.] [법률 제13082호, 2015.1.28., 타법개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11.>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

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2.12.11.>

⑦ ~ ⑧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⑩ ~ ⑪ (생략)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5.4.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4.20., 타법개정]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⑨ ~ ⑪ (생략)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866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1.] [법률 제11943호, 2013.7.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7.>

1. ~ 30. (생략)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 34. (생략)